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

(한무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0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1.

발의자 : 한무경 · 김성원 · 김승수
김영선 · 김영식 · 노용호
성일종 · 양금희 · 유경준
윤한홍 · 이채익 · 조은희
최형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제5항의 단서규정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지·시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용지를 공급받고 이를 모기업인 국내 기업에 재공급하는 등 편법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신설되었고, 이후 2021년 6월 15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16조제6항제3호로 개정되었음.

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,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효율화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지·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부지·시설의 제공이 불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

이에 “국·공유재산을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제공하지 아니할 것”이라는 부문 중 특수관계인에 “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”를 추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(안 제16조제6항제3호).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6항제3호 중 “특수관계인에게”를 “특수관계인(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)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